# 의로운 구민 관리

# □ 근거법령

O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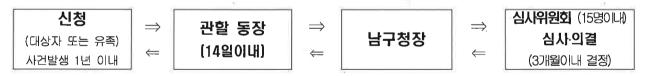
### ② '의로운 구민'의 정의

- O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로 다음의 구조행위를 한 사람
  - ▷ 자동차,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
  - ▷ 천재지변, 수난(水難)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
  - ▷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
  - ▷ 그 밖에 방범, 환경정화활동,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

### ③ 적용범위

- O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적용
  - ※ 단, 타 법률(조례)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람은 제외

# ④ 의로운 구민 선정절차



# 5 예우의 종류

- ① 위로금지급
  - ▷ 사망자 : 10,000천원
  - ▷ 부상자 : 10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
    - ※ 의로운 구민, 사망시 배우자·자녀·부모·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

### ② 예우

- ▷ 「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
- ▷ 남구 단위 행사에 초청 등 예우
- ▷ 공적 소개 : 게시판, 구 홈페이지, 구보, 홍보책자 등
- ▷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